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직접 설치 및 운영 시 비용지원>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53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화단지 기반시설 직접 설치 및 운영 시 비용지원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33인
2. 제 안 일 : 2024. 6. 19.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화단지 기반시설 직접 설치 및 운영 시 비용지원

(안 제20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이 경우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②(생략) <u><신설></u>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②(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⑥(생략)	④ ~ ⑦(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¹⁾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와 관련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한 규정으로서, 전략산업등²⁾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함에 따라 대규모 시설투자 등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이후 '24년까지 1,038억원을 특화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였음.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의미함.

[표 2]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위: 백만원)

	2023 실적	2024예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00	—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00	—
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	3,7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중 발췌

그런데, 이러한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언론 등에서는 전략산업등의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현 지원 수준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특화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먼저, 현행법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와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 지원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반면,

개정안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³⁾

한편, 개정안은 비용지원의 대상을 “산업기반시설”에 한정하고 있어,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아닌) 현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의 지원 대상에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을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지원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지만, 지원금의

3) 물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보다는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고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 제20조제1항이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에 대한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미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
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
고 있는 중이므로 별도의 조문 신설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성을 갖고 있고, 제·개정 시 입안 - 부처협의 - 각
종사전영향평가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
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고, 대통령이 입법
주체이므로 여러 부처를 규율하며, 법체계상 높은 위계(位階)를 갖는
반면,

‘고시(告示)’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
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제·개정시 입안-행정예고-부처협의-(필요시)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개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따라서 대통령령에 비하

여 사업자를 지원함에 있어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 및 위계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측면이 있음⁴⁾.

그러므로, 비용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하위규정으로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할지, 또는 ‘고시’로 할지 등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4) 둘 이상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고시는 ‘공동고시’ 형식으로 발령할 수 있으나, 개정 절차가 단순하여 부처간 상이하게 고시가 관리되는 경우도 있음.